



**THE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FAIR HOUSING NON-DISCRIMINATION POLICY**

**뉴욕시 주택청
무차별 공정 주택 정책**

모든 유자격 입주자와 신청자에게 평등한 주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뉴욕시 주택청의 정책입니다. 가구를 선택하고 뉴욕시 주택청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장애, 성적 기호, 나이, 가족 상태, 혼인 상태, 동반자 상태, 합법적 직업, 합법적 수입원, 군복무 상태, 영주권 상태나 시민권 상태, 또는 가정폭력, 연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라는 이유로 인해 아무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64년의 민권법 제 6장, 1973년의 재활법 제 504항, 1968년의 공정 주택법, 1988년의 공정 주택법 수정조항, 1990년의 장애 미국인법과 2008년의 장애 미국인법 수정조항, 그리고 뉴욕주와 뉴욕시의 인권법에 따랐습니다.

뉴욕시 주택청은 일반적으로, 요청에 의해, 장애를 갖고 있는 유자격 입주자와 신청자에게 그들이 뉴욕시 주택청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자격 수화 통역자, 점자 문서 등을 포함하여 언어, 청각, 시각 장애자들에게 다른 방도로서 정보제공과 교신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주택청은 장애를 갖고 있는 유자격 입주자와 신청자가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당히 수정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는 뉴욕시 주택청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절차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아래 연락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부터 오후 5:00까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Equal Opportunit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Unit, 250 Broadway, 27th Floor,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06-4468, TTY 212-306-4845

주택 차별이나 보복에 대해 신고하기를 원하는 입주자나 신청자는 아래 연락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부터 오후 5:00까지 연락하여서 차별 불평 양식(NYCHA 036.024)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청
Department of Equal Opportunity
250 Broadway, 27th floor
New York, NY 10007
전화 (212) 306-4468
팩스: (212) 306-4439
TTY: (212) 306-4845

또한 입주자나 신청자는 주택 차별이나 보복에 대해 아래의 연방, 주 또는 시의 인권 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p>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New York Regional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26 Federal Plaza, Room 3532 212) 542-7519 1-800-496-4294 TTY (212) 264-0927</p>	<p>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뉴욕주 인권부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ew York 10458 (718) 741-8400 TDD: 1-718-741-8300</p>	<p>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뉴욕시 인권 위원회 40 Rector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06 (212) 306-7500</p>
---	--	--

본 정책의 사본은 요청에 의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